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2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20일, 한정애의원 등 13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국회(정기회)

제6차 전체회의(2025.11.1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소위원회부

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1.18.) 상정, 축조심사

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1.21.) 상정, 축조심사

제432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2.5.) 상정, 축조심사

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2.12.) 상정, 축조심사, 의
결(대안반영폐기)

제2차 전체회의(2026.2.12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
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한정애의원)

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,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, 신청 건수의 17%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.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%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한석현)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속 사업장 규모,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, 업무

상 재해발생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,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개정안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대리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바,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및 산재보상의 공공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등 의의가 있음.

다만, 개정안은 ‘공인노무사’로 하여금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‘변호사’를 국선대리인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,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이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‘소속 사업장 규모, 소득기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’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 략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생 략

6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없 음

8. 기타사항

없 음